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1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김민석 · 최수진

김소희 • 서천호 • 최형두

김선교 · 김장겸 · 백종헌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,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,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.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.

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,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 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·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3항, 제10조제4항·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"로한다.

- ③ 제1항의 기재사항을 시각·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, 첨부문서에는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여야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점자, 음성변환용 코드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위한 준비행위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점자, 음성변환용 코드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기재·표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- 제3조(점자, 음성변환용 코드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 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 ①・	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	③ 제1항의 기재사항을 시각ㆍ
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	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
시할 때 제품의 명칭, 영업자의	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
<u>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</u>	는 점자 및 음성・수어영상변
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.	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
	는 방법 및 기준으로, 첨부문서
	에는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
	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
	및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
	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
	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・
	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u>④</u>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	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	<u>정에</u>
령으로 정한다.	
제4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40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~ 5의2. (생 략)	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5의3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
	점자 및 음성・수어영상변환
	용 코드 등을 표시하지 아니
	<u>한 자</u>
6. • 7. (생 략)	6. •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